

소총 기술규칙 목차

7.1	총 칙	1
7.2	안 전	1
7.3	사격장 및 표적 기준	1
7.4	소총 및 실탄	1
7.5	복장 규정	9
7.6	사격 경기절차 및 경기규칙	17
7.7	소총 경기	19

(주) 그림 또는 도표에 언급된 특정 정보는 관련조항의 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소총 기술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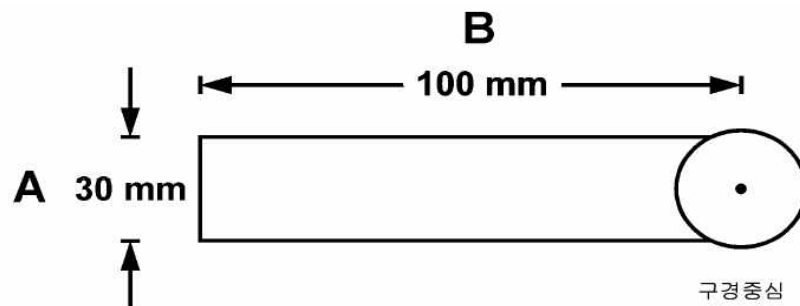
- 7.1 총 칙**
- 7.1.1** 본 규칙은 ISSF 기술규칙의 일부로서 모든 소총 종목에 적용된다.
- 7.1.2** 모든 선수, 팀 대표 및 임원은 ISSF 규칙을 숙지 및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선수는 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7.1.3** 본 규칙이 오른손잡이 선수에게 적용되는 경우, 그 역(逆)의 내용이 왼손잡이 선수에게 적용된다.
- 7.1.4** 본 규칙이 특정한 성(남자 또는 여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남·여 모든 종목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7.2 안 전**
-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ISSF 안전규칙은 기술규칙 6.2 참조
- 7.3 사격장 및 표적 기준**
- 표적 및 사격장의 기준은 기술규칙 6.3 참조
사격장 및 기타 시설의 요건은 기술규칙 6.4 참조
- 7.4 소총 및 실탄**
- 7.4.1 모든 소총의 기준**
- 7.4.1.1 단발장전 소총.** 단발사격 소총은 매발 사격 전에 수동으로 단발(1발)만 장전하는 소총만 사용할 수 있다. 단, 300m 스탠다드 소총 종목의 경우, 국제군인스포츠평의회(CISM)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경기 전에 장비검사를 통과한 300m 소총은 사용할 수 있다.
- 7.4.1.2 한 종목 당 1정의 소총.** 한 종목의 예선, 본선 및 결선에 **오직 1정의 소총**만 사용할 수 있다. 격발 장치, 총열 및 개머리는 교체하지 못한다. 단, 탈착이 가능한 개머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격발장치, 총열 또는 개머리에 부착하는 부속품은 교체할 수 있다. 소총이 고장난 경우, 주리의 승인 하에 규칙 6.13.3에 의거하여 교체할 수는 있다.
- 7.4.1.3 움직임 또는 진동 감소장치.** 발사하기 전에 소총의 진동이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감소, 느리게 또는 최소화하는 모든 장치, 기계 장치 또는 시스템은 사용을 금한다.
- 7.4.1.4 권총식 손잡이.** 오른손잡이 선수용 손잡이는 멜빵 또는 왼팔에 의탁하는 형태로 제작되면 안된다.
- 7.4.1.5 총열** 및 연장관에 구멍을 내는 것을 일절 금한다. 소총에 반동 제어기 및 소염기의 부착을 금지한다. 강선과 실탄장전을 위한 약실을 제외하

고, 총열과 연장관 내부에 어떠한 설비나 장치를 하는 것도 금한다.

7.4.1.6

조준장치

- 가능쇠나 가능자에 밝거나 옅은색의 렌즈 또는 편광필터를 부착할 수 있으나 조준장치는 어떠한 시스템 렌즈도 사용할 수 없다.
- 광선 시스템, 광학조준기, 광학 렌즈 또는 망원경은 소총에 부착할 수 없다.
- 가능자에 한하여 단일 교정렌즈를 부착할 수 있으며, 선수가 교정 혹은 옅은 렌즈를 착용 할 수 있다.
- 격발 기계장치가 작동토록 의도된 모든 조준장치는 금한다.
- 가리개를 소총 또는 가능자에 부착할 수 있다. 가리개는 세로(높이)가 30mm 이하(A) 이어야 하고 조준하지 않는 쪽 가능자 구경 중심으로부터 100mm 지점 이내에 있어야 한다. 가리개를 조준하는 눈의 측면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오른쪽 견착에 왼쪽 눈 조준, 또는 왼쪽 견착에 오른쪽 눈 조준으로 사격할 경우, 확대렌즈 시스템이 아니면 프리즘 또는 거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오른쪽 견착에 오른쪽 눈 조준일 경우는 프리즘 또는 거울의 사용을 금한다.



가능자 가리개

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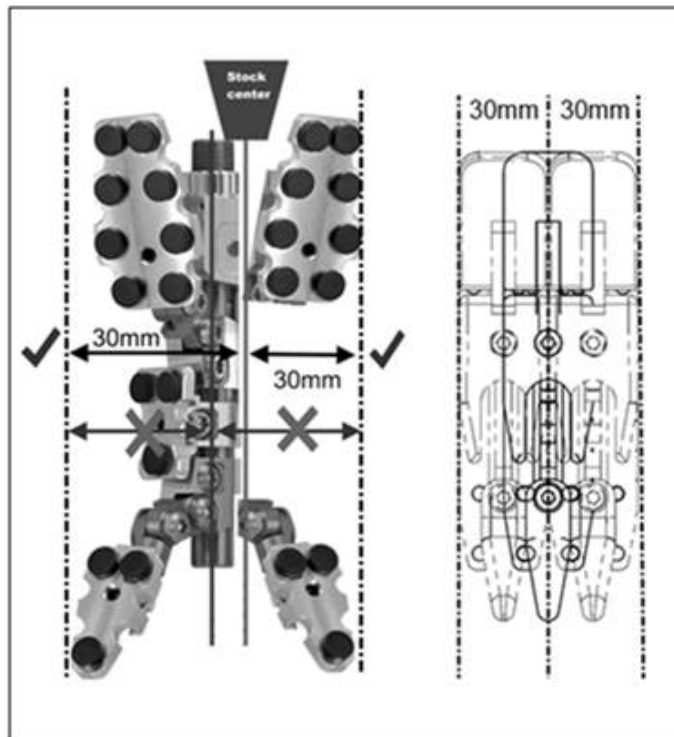
전자 방아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모든 구성물(부품)이 소총의 격발부위나 개머리내에 견고하게 부착 또는 내장되어 있어 외부에서 배터리나 배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방아쇠를 작동할 경우.
- 소총의 모든 구성물을 포함하여 장비검사소에 제시한 경우.
- 모든 구성물을 포함한 소총이 해당 종목에서 명시하는 규칙의 수치 및 중량에 부합하는 경우.

7.4.2 300m 스탠다드 소총과 10m 공기소총 기준

본 규칙에 기술된 규격은 소총 규격도표 7.4.4.1 및 소총 구격표 7.4.4.2 에도 설명되어 있다.

7.4.2.1 개머리판은 상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머리판은 개머리 중심의 좌우로 수평 이동하거나 개머리판을 수직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 여러 겹(조각)으로 구성된 개머리판 사용시, 개머리판의 모든 부분은 반드시 수평 이동하거나 개머리 중심으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개머리판(바깥모서리) 개머리 중심부에서 측정시, 30mm 초과할 수 없다. 개머리 중심선은 총구 중심선과 수직을 이룬다.



7.4.2.2 파지용 엄지 구멍이나 엄지 받침, 손바닥 받침, 손수도(手稻) 받침 및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는 사용을 금한다. 손수도 받침이란 손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권총식 손잡이의 앞과 옆을 돌출시키거나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권총식 손잡이, 뺨 붙임이나 개머리 하단은 해부학적으로 만들어 저서는 안된다.

7.4.2.3 권총식 손잡이는 총열 중심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각판 측면으로(옆으로) 60mm를 초과할 수 없다.

7.4.2.4 개머리 최하점(개머리판에서 권총식 손잡이까지 부위)의 길이는 총열 중심선으로부터 140mm 이하여야 함. 단 나무 개머리 소총은 제외.

7.4.2.5 개머리 전단(권총식 손잡이에서 총구방향의 부위) 최하점은 총열 중심선으로부터 120mm이하여야 함.

7.4.2.6 파지 기능을 증대시키는 손잡이 확장물질을 전단부, 권총식 손잡이 혹은

또는 개머리의 하단에 부착하는 것은 금한다.

7.4.2.7

외부 무게추

- 총열에 부착하는 추는 총열의 중심부터 반경이 3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총열추는 총열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 개머리에서 아래 또는 밖으로(옆으로) 돌출된 모든 장비나 무게추 사용을 금한다.
- 개머리판의 아래 부분에서 앞 또는 옆으로 돌출된 장비나 무게추는 사용을 금한다.
- 무게추는 소총 어디에도 부착할 수 있지만 개머리 표면 내에 위치해야 함(무게추는 개머리에서 돌출될 수 없다).
- 소총에 무게추를 부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테이핑을 금한다.

7.4.3

300m 스탠다드 소총에 한정된 기준

모든 300m 소총은 소총 규격표 상의 세부내용과 다음의 부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 방아쇠 최소압력: 1,500 그램
방아쇠 압력은 총열과 함께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측정하고, 방아쇠 압력검사는 최종시리즈 종료 직후에 하여야 한다. 측정은 최대 3회까지 시도 가능하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 모든 자세에서 동일한 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개머리판 및 손멈치의 조정이나 가늠쇠의 변경 또는 가늠자 및 렌즈의 조정은 허용된다. 총열 청소를 위해 경기중 땀불임 제거는 허용되며 주리 감독 하에 노리쇠 제거도 가능하다.
단, 자세는 유지되어야 한다.
- 약실 후면부터 총구까지 측정하였을 때, 연장관을 포함한 총열의 전체길이는 762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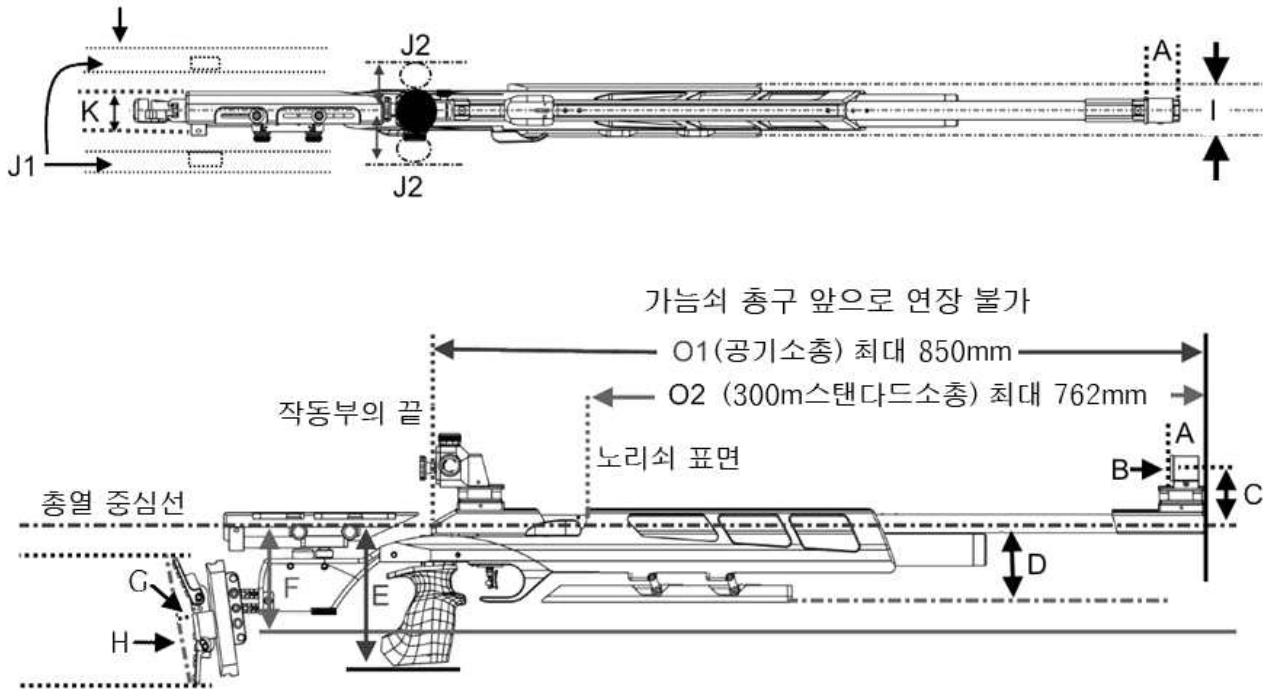
10m 공기소총에 한정된 표준

소총 규격표와 다음의 부가조건에 부합하는 공기 압축식 또는 가스식 소총은 어떠한 형태이든 사용할 수 있다.

- 소총 기계장치의 후방 끝부터 총구 앞 끝까지의 총길이가 85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 가늠쇠는 총구 앞으로 연장할 수 없다.

7.4.4.1

소총 규격표



7.4.4.2 소총 규격표

C, D, E, F J1, J2 및 K 는 총구의 중심선부터 측정한 수치임.

항목	소 총 수 치	300m 스탠다드소총	공기소총
A	가늠쇠 뭉치의 길이	50mm	50mm
B	가늠쇠 뭉치의 직경	25mm	25mm
C	가늠쇠 링 또는 전면의 정점 중심부터 구경 중심까지의 직거리	60mm	60mm
D	개머리 전단의 높이	120mm	120mm
E	권총식 손잡이의 최저점	160mm	160mm
F	개머리 최하점(개머리판에서 권총식 손잡이까지 부위)의 길이 *나무로 된 소총은 적용되지 않음.	140mm	140mm
G	개머리판 만곡부의 최대 깊이	20mm	20mm
H	개머리판의 최대 길이	153mm	153mm
I	총대 최대 두께(너비)	60mm	60mm
J1	총열 중심선과 수직면으로부터 뺨 붙임까지의 최대거리	40mm	40mm
J2	총열 중심선과 수직면으로부터 권총식 손잡이의 어떤 부분이던 까지의 최대거리	60mm	60mm
K	개머리판의 수평이동거리 (개머리판 전면-개머리 끝 중심선)	30mm	30mm
L	방아쇠 압력	최소 1,500g	무제한
M	조준장치를 포함한 중량 (300m는 손멈치 포함)	5.5kg	5.5kg
N	가늠쇠가 총구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	불 허	불 허
O1	공기소총: 공기소총 시스템의 전체길이		850mm
O2	스탠다드 소총: 총열(총구-노리쇠 표면) 전체길이 (연장부분 포함)	762mm	

안 되며

e) 모든 장치나 무게추가 개머리판의 가장 밑부위 보다 돌출되면 안된다.

7.4.5.2

손바닥 받침

손바닥 받침은, 입사 자세에서 앞쪽 손으로 소총을 지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머리 전단 아래에 탈부착 또는 연장한 부위를 말한다. 이러한 연장은 전체 길이가 총열 중심선 밑으로 2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7.4.5.3

권총식 손잡이

권총식 손잡이는 어떠한 부분도 손등이나 손목에 닿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형태로 연장 또는 조립하면 안된다.

7.4.5.4

300m 소총의 표준

300m 소총의 표준은 50m 소총(남·여) 조건과 동일. 규칙 7.4.5와 **소총 세부 제원표 (7.7.5)** 참조

300m 소총은 최대너비 60mm의 아지랑이 방지 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7.4.6

실탄

소총	구 경	기 타 세 부 조 건
50m	5.6mm (0.22인치)	림 파이어 롱라이플. 납 또는 유사한 부드러운 재료로 제조된 실탄만 허용
10m	4.5mm (0.177인치)	납 또는 유사한 부드러운 재료로 제조된 것이면 어떠한 유형이든 방출물에 관계없이 허용
300m	최대 8mm	선수 또는 사선요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규격의 실탄이면 허용. 단, 예광탄, 철갑탄 및 소이탄의 사용은 불허

7.5

복장 규정

복장 및 복장 검사에 관한 일반기준은 기술규칙 6.7 참조

7.5.1

소총 복장의 일반기준

7.5.1.1

모든 사격재킷, 사격바지 및 장갑은 일반적으로 인정한 조건하에서 그 물리적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즉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격 조건에서 더 경직시키거나, 두꺼워지거나 딱딱하게 변하지 않는 신축성 있는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안감 덧댐과 보강재료도 모두 동일한 조건(유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안감 혹은 덧댐은 어떠한 것이든 누비거나 십자로 꿰매거나 봉할 수 없으며 또는 일반적인 재봉선 바깥에 부착할 수 없다. 안감이나 덧댐은 모두 복장의 일부로 측정하여야 한다.

7.5.1.2

모든 ISSF 대회에서 소총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단 한 벌의 사격 재킷 및 바지만 착용할 수 있다. 모든 사격 재킷 및 사격 바지는 ISSF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ISSF 장비검사소에서 발급한 고유의 일련번호가 매겨진 씰(seal)이 있어야 한다. 사격복 상·하의에 씰이 없을 경우, 장비검사소에서 씰을 발급 받고 ISSF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 선수는 단 한 벌의 상·하의만 등록할 수 있다. 한 벌 이상의 재킷 또는 바지에 ISSF 씰을 받은 ~~한~~ 선수는 향후 대회에서 어떤 복장을 사용할 지를 ISSF 장비검사소에 알리고 품목당 단 1개의 씰만 남길 수 있다. 재킷이나 바지 또는 씰이 없는(새로운 또는 교체한) 모든 품목은 씰을 얻고 이전의 씰은 회수한다(6.7.6.2.e). 선수가 경기 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검사에서 등록된 씰 번호가 그 선수가 사용한 복장의 씰 번호가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5.1.3

일상적인 선수용 훈련복 또는 선수용 운동화를 모든 종목이나 자세에서 착용할 수 있다. 경기 중에 반바지를 착용했을 때는 바지 하단이 무릎 뼈 중앙을 기준하여 위로 15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샌달은 어떠한 형태든 착용을 금한다.

7.5.1.4

선수는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복장 품목들이 규칙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장비검사소는 선수가 복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훈련 일부터 소총 경기 최종일까지 운영되어야 하며, 선수는 본인의 소총 사격복이 규칙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경기 전에 장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선수는 경기용 재킷 및 바지를 마련할 때, 온도, 습도 또는 기타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상의 오차를 감안하여야 한다.

7.5.1.5

경기 후 검사는 규칙(6.7.9)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선 및 본선 경기 후 모든 소총 복장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7.5.2

복장 측정기준

7.5.2.1

두께 측정기준

소총 경기용 복장은 아래 복장 두께 측정 표준에 따라야 한다.

측정 위치		재킷	바지	신발	장갑	내의
일반 부위	홀두께	2.5mm	2.5mm	4.0mm	-	2.5mm
	겹두께	5.0mm	5.0mm	-	-	5.0mm
	총두께	-	-	-	12.0mm	-
보강 부위	홀두께	10.0mm	10.0mm	-	-	-
	겹두께	20.0mm	20.0mm	-	-	-

위의 두께 측정 표준치보다 크지 않은 것(편차 0)은 허용된다.

7.5.2.2

강도 측정기준

소총 경기용 복장은 아래의 강도 측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측정 장비로 최소 3.0mm까지 눌러지면 그 소재는 허용된다.
- 측정치가 3.0mm 미만으로 나타나면 그 소재는 너무 뻣뻣한 것이다. 최소 측정치인 3.0mm 미만일 경우 불합격이다.
- 상의나 하의의 모든 부분이 60mm 측정 장비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측정 부분이 정상 검사를 하기에 너무 적으면 (60mm 또는 그보다 더 넓은 평평한 부분이 없을 경우) 솔기(실밥) 위로 측정하여야 한다.

7.5.2.3

사격화 밀창 유연성 측정기준

선수용 사격화의 밀창은 사격화를 측정기기를 가지고 15 뉴튼 미터(줄)의 강도로 조였을 때 최소 22.5°는 접혀져야 한다. (규칙 6.5.3 참조)

7.5.3

사격화

가볍고 일상적인 운동화 착용은 모든 자세에서 허용된다.

아래의 세부사항을 초과하지 않은 특수 사격화는 10m, 50m 및 300m 3자세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 소총복사 종목에서는 특수 사격화의 착용을 금한다.

7.5.3.1

신발의 상단 재질(밀창선 위)은 부드럽고 신축성 있고 유연한 것이어야 하며, **사격화 치수표**(7.5.3.6 참조)의 D점과 같이 모든 편평한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모든 안감을 포함한 두께가 4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7.5.3.2

신발 밀창은 그 길이와 넓이가 동일자재와 구성물로 만들어지고 발 앞쪽 전체가 구부러지기 쉬운 동질의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선수는 신발 안에 제거 가능한 안창 또는 삽입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발 앞쪽이 구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7.5.3.3

신발의 탄력성을 증명하기 위해 선수는 FOP(경기구역)에 있을 때 항상 정상적(발뒤꿈치-발끝)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첫 위반 시 경고

가 주어지며 재차 위반 시는 2점 감점 및 실격 처리한다.

7.5.3.4

신발의 바닥에서 정점까지의 높이(사격화 측정표 C)는 신발 길이의 2/3 을 초과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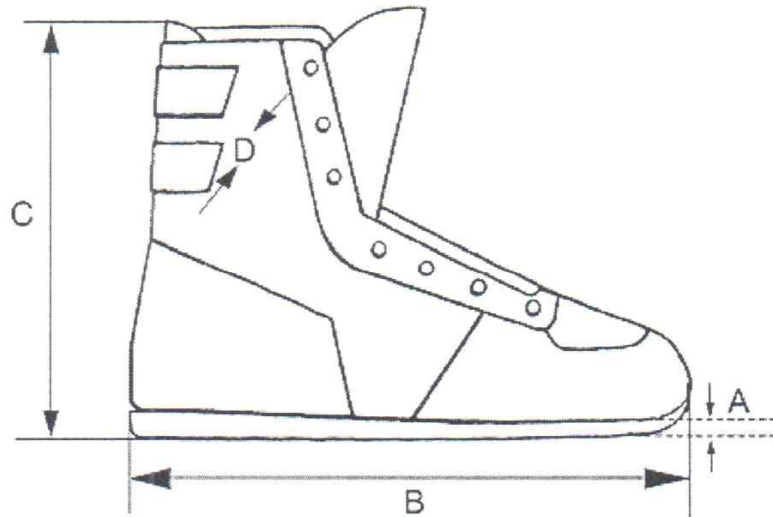
7.5.3.5

선수는 외형적으로 동일한 한 켤레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7.5.3.6

사격화 치수표

선수의 신발은 그림 및 표에 기술된 치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A	신발창의 최대 두께 : 10mm
B	신발 전체길이 : 착용자의 발 크기에 따름.
C	신발 최대높이 : 전체길이(B)의 2/3 이내
D	신발 뒤편 재질의 최대두께 : 4mm
신발창의 외부 만곡도는 신발의 외부 만곡 형태와 동일하여야 하고, 어느 부위든 신발의 외부 만곡선보다 5.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발뒤꿈치 또는 발끝이 네모지거나 평평하게 절단되면 안 된다.	

7.5.4

사격 재킷

7.5.4.1

안감을 포함한 재킷의 본체와 소매는 편평한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모든 부위가 홀두께 2.5mm, 겹두께 5mm를 초과할 수 없다. 재킷의 길이가 주먹을 동그랗게 쥐었을 때, 주먹 아래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사격 재킷 치수 7.5.4.9 참조)

7.5.4.2

재킷의 잠금 부분은 조절할 수 없는 도구, 예를 들어 단추 또는 지퍼만이 허용된다. 재킷을 잠겼을 때 100mm 이상 겹쳐지면 안된다(재킷 표 참조). 재킷은 느슨하여야 한다. 느슨한 정도는, 정상적으로 잠겼을 때 겹쳐지는 부분 즉 단추 중심부터 단추 구멍의 바깥 모서리까지 측정한 수치가 최소 70mm는 되어야 한다. 이는 양쪽 팔을 내린 상태에서 장력이 6~8kg인 중첩 측정게이지로 측정한다. 단추 구멍을 둘러싼 부위는

최대 12mm로 제한하고 이 부분은 2.5m 두께를 넘는 것도 허용된다.

7.5.4.3

인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끈, 레이스, 솔기(이음새), 바느질 또는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그러나 어깨 덧담 부위의 느슨한 재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1개의 지퍼 또는 2개 이하의 끈을 부착하는 것은 허용된다.(사격 재킷 치수 7.5.4.9 참조) 본 규칙과 그림에 기술된 것 이외의 지퍼나 잠금 또는 조임 기구는 사용을 금한다.

7.5.4.4

재킷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거나 뻣뻣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1개 이상의 재료를 등판에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등판의 모든 부분은 최대 두께 2.5mm 및 최소 경직도 3.00mm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7.5.4.5

입사 자세에서 총을 지지하는 팔의 팔꿈치가 닿는 재킷의 측면(옆) 판에는 팔꿈치 끝을 기준하여 위로 70mm, 아래로 20mm 사이에 어떠한 솔기(실밥)도 있으면 안 된다. 이는 선수가 입사자세로 상의를 입고 단추를 완전히 채우고 총을 잡은 상태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7.5.4.6

단추를 잠그고 상의를 입었을 때 선수는 팔을 충분히 뻗을 수 있어야 (소매가 똑바르게 펴져야) 한다. 복사와 슬사 자세에서는 사격 재킷의 멜빵을 부착한 쪽의 소매는 그 손의 손목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선수가 사격자세를 취했을 때 소매는 손이나 장갑과 총대의 전상(前床) 사이에 두면 안 된다.

7.5.4.7

벨크로, 끈끈한 물질, 액체 또는 분무기를 사격 재킷 내·외부, 패드 또는 신발과 사대 바닥이나 장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단, 재킷의 재질을 거칠게 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를 위반 시 규칙에 따라 처벌한다.

7.5.4.8

사격 재킷에 다음의 경우 바깥 표면에만 보강 조각(천)을 댈 수 있다;

- a) 재킷의 재질과 모든 안감을 포함하여 두께가 최대 :
홀두께 10mm, 또는 겹두께 20mm
- b) 보강재를 양쪽 팔꿈치에 댈 수 있으나 길이가 소매 둘레의 1/2를 초과하면 안 된다. 멜빵을 지지하는 팔에는 팔 상단부터 소매 끝 100mm 지점까지 연장, 보강재를 댈 수 있다. 반대쪽 팔에 최대 300mm 길이의 보강재는 댈 수 있다.
- c) 멜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훅, 고리, 단추 또는 유사한 기구 중 1개만을 선택, 소매 바깥쪽 또는 멜빵이 있는 팔의 어깨 봉합선 바깥쪽에 고정시킬 수 있다.
- d) 개머리판을 지지하는 어깨의 보강재는 최대길이 300mm를 초과할 수 없다. (규칙 7.5.4.9 참조)
- e) 모든 안주머니는 금지된다.
- f) 바깥 주머니 1개만을 재킷 전면의 오른쪽(왼손잡이 선수는 전면 왼쪽)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며, 주머니의 최대 허용 크기는 재킷의 아래 가장자리를 기준하여 높이가 250mm, 폭이 2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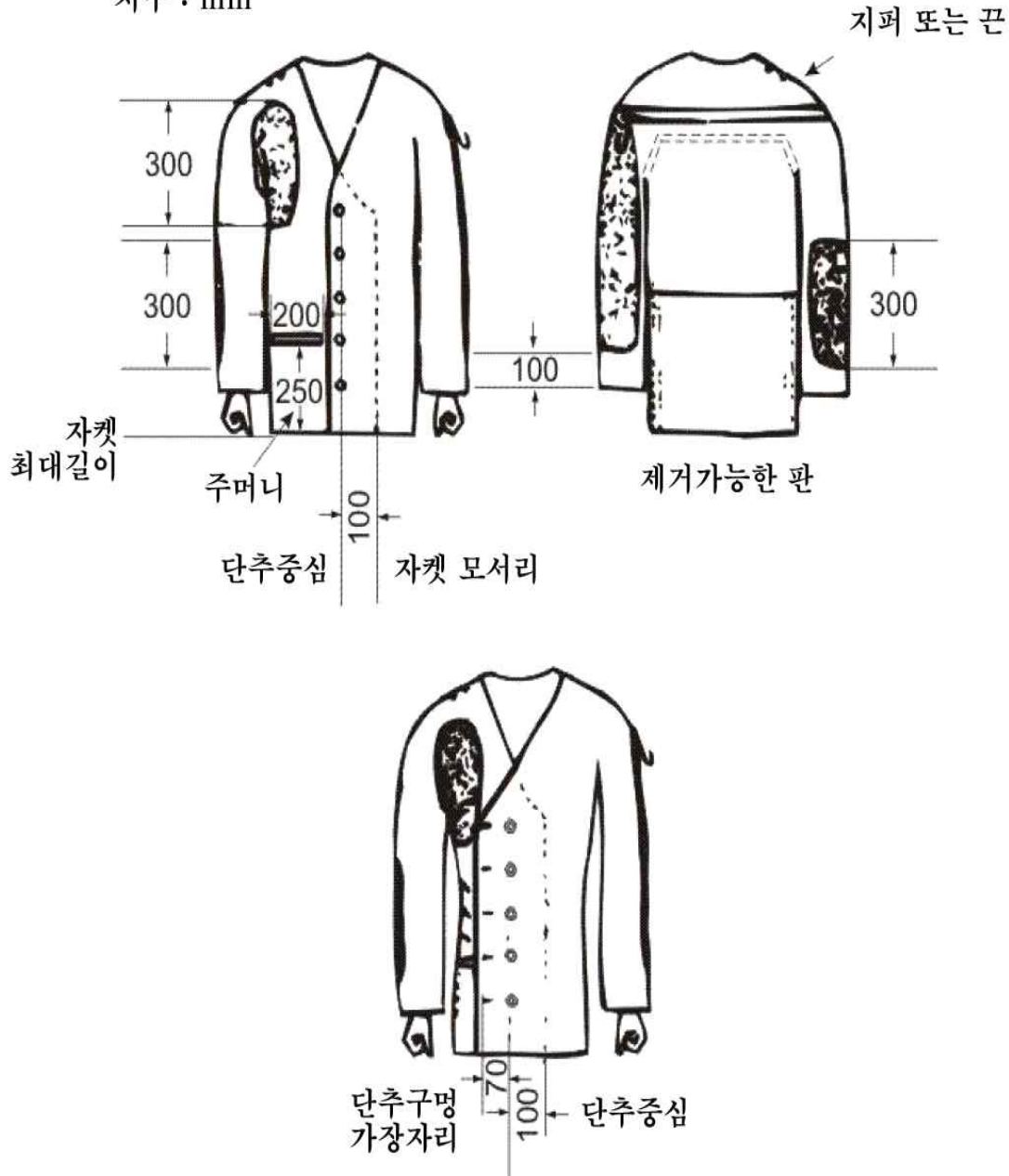
이다.

7.5.4.9

사격 재킷의 치수

사격 재킷은 그림에 표시된 세부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치수 : mm



7.5.5

사격 바지

7.5.5.1

바지는 안감부위를 포함하여 편평한 표면을 어느 부위에서 측정하든 홀 두께가 2.5mm, 편평한 면이 측정될 수 있는 곳의 겹두께가 5.0mm를 초과하면 안된다. 바지의 정점(가장 윗지점)을 고정시키거나 골반뼈 정점에서 50mm 이상 올려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바지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다리 또는 둔부(엉덩이) 주변의 바지를 조여 매든지, 끈으로 조이든지, 지퍼 또는 단추로 채우는 것은 금한다.

바지를 보조하기 위하여, 넓이가 40mm, 두께가 3mm를 초과하지 않는 일상적인 허리벨트 1개 또는 바지멜빵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입사에서 벨트를 사용할 경우, 버클 또는 고정기구로 왼팔 또는 팔꿈치를 지지하면 안 된다. 왼팔이나 팔꿈치 아래의 벨트를 2중, 3중으로 하면 안 된다. 바지에 허리 밴드가 있는 경우, 이 밴드의 너비는 7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리 밴드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하면 허리벨트를 착용할 수 없다. 허리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순수한 허리밴드의 두께는 최대 3.5mm까지 허용한다. 벨트 고리는 최대 7개까지 허용한다. 각 벨트 고리의 넓이는 고리 사이의 간격이 최소 80mm이고, 너비는 20mm를 초과하지 못한다. 바지를 잠그기 위하여 후크 1개에 눈 또는 스냅 조임기구 각 5개까지 또는 유사한 잠금장치나 벨크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잠금장치는 1가지만 사용 가능하다. 벨크로 잠금장치와 다른 잠금장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바지는 다리 부위가 느슨하여야 한다. 몸체 어느 부위든 인위적으로 지지되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사격용이 아닌 일상적인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7.5.5.2

지퍼, 단추, 벨크로나 유사한 조임 또는 잠금장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바지에 부착할 수 있다.

- 바지 앞섶을 개폐하기 위한 조임 또는 잠금장치는 1가지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섶 가림이 가랑이 아래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 메울 수 없는 구멍들은 허용된다.
- 바지 양쪽 다리에 각1개의 조임 장치만 허용된다. 열림(조임) 장치는 바지의 정점을 기준으로 70mm 이상 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단, 바지 다리의 바닥까지 연장할 수는 있다. (재킷 및 바지 표 참조). 다리 윗쪽의 앞면이나 다리 뒷면 중 한 부위에만 조임 장치를 허용한다. 한 다리의 양쪽 부위에 조임 장치를 하는 것은 불허한다.

7.5.5.3

보강재를 바지의 양쪽 무릎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무릎 덧댄은 최대길이 300mm까지 허용한다. 무릎 보강재는 다리 둘레의 1/2를 초과하면 안 된다. 바지 재료와 안감을 포함한 보강재는 홀두께 10mm(겹두께 20mm)를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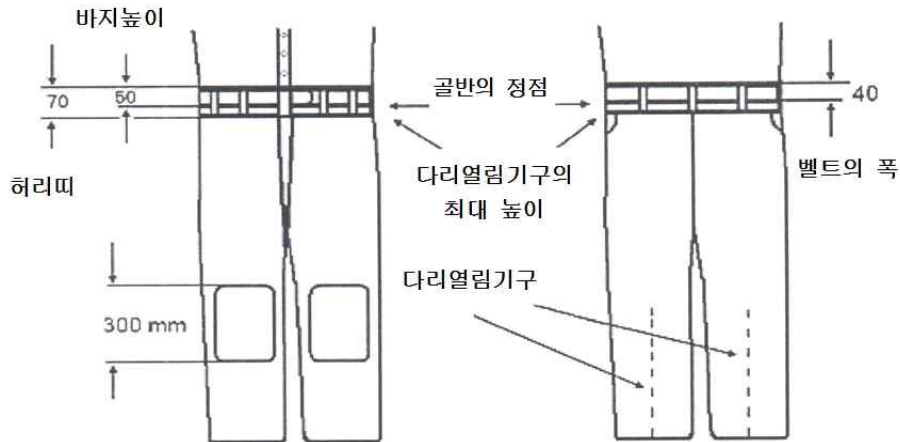
7.5.5.4

소총 복사 경기에서 사격 바지의 착용을 금한다. 그러나 소총 3자세 경기의 복사 자세에서는 착용할 수 있다.

7.5.5.5

사격 바지의 치수

사격 바지는 아래 그림에 표시된 세부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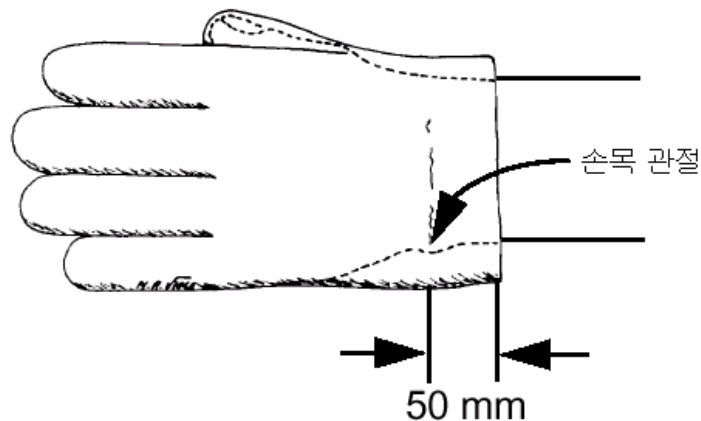
사격 장갑

7.5.6.1

봉합과 접합점 외의 모든 곳에서 장갑 앞면과 뒷면을 함께 측정하였을 때, 전체 두께가 12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7.5.6.2

손목 관절 중앙 부위에서 측정하였을 때, 장갑이 손목 위로 5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그림 참조). 손목에는 끈 또는 다른 잠금장치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손목 부분은 장갑 착용을 위해 신축성이 있을 수 있지만 느슨하여야 한다.



7.5.7

내의 (속옷)

7.5.7.1

재킷 속의 내의는 두께가 홀 2.5mm, 겹 5mm를 초과할 수 없다. 바지 속의 모든 복장에도 동일한 두께가 적용된다. 청바지나 기타 평범한 바지도 사격바지 안에 착용할 수 없다.

7.5.7.2

사격 재킷 또는 바지 속에 일상적인 개인용 속옷 또는 훈련복을 입을 수는 있으나, 선수의 다리, 몸체 또는 팔을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부적절하게 감소시키는 것이면 안 된다. 기타 다른 속옷은 착용할 수 없다.

7.5.8 장비 및 부품**7.5.8.1 탄착 확인용 망원경**

50m와 300m 종목에서만 탄착 및 바람 확인용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망원경을 소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7.5.8.2 멜 빵

멜빵의 폭은 최대 40mm까지 허용한다. 멜빵은 왼팔 윗 부분에만 멜 수 있고 그 곳에서 개머리의 전단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멜빵은 소총 전단의 한 지점까지만 부착할 수 있다. 손이나 손목의 한쪽만을 따라서 지나가야 한다. 멜빵 고리와 손 멈치를 제외하고, 소총의 어떤 부분이든 멜빵이나 멜빵 부착물에 닿으면 안 된다.

7.5.8.3 소총 받침

사격 간에 소총을 받쳐 놓을 수 있는 소총 받침대는 입사 사격 자세시 받침대의 어느 부분이든 선수의 어깨 높이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 받침대는 입사 시에 받침대의 어느 부분이든 테이블이나 벤치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소총을 받치고 있는 동안 양쪽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소총이 소총 받침대에 놓여있을 때에도 선수가 잡고 있어야 한다.

7.5.8.4 사격 장비함 또는 가방

입사에서 사격 간에 사격 장비함이나 가방, 탁자 또는 스탠드를 소총 받침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대에서 사격 장비함이 선수 어깨의 전면보다 앞쪽에 있으면 안 된다. 사격 장비함, 탁자 또는 스탠드가 인접한 선수를 방해하거나 바람막이 기능을 할 수 있는 크기나 구조물이어서는 안 된다.

7.5.8.5 슬사용 베개

슬사에서 1개의 원통형 베개를 사용할 수 있다. 베개의 최대 허용크기는 길이 25cm, 직경 18cm이다. 베개는 부드럽고 유연성 있는 재질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천(붕대)으로 감거나, 베개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다른 장치는 사용을 금한다.

7.5.8.6 2각대

2각대는 사격 전후 소총을 지지하기 위해 또는 자세전환 시 사용한다. 그러나 본사 동안에는 2각대가 **고정 혹은 접혀 있든지** 간에 소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7.5.8.7 슬사 발뒤꿈치

슬사에서 별도의 탄력있고 압축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된 최대 20cm×20cm의 패드를 발뒤꿈치 위에 놓을 수 있다. 슬사 발뒤꿈치 패드는 복장 두께 측정기로 압축했을 때 그 두께가 1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7.5.8.8

바이지 또는 캡 모자

캡 또는 바이지 모자를 착용할 수 있으나, 선수 사격 중에 가늠자(시야를 가려서는 안됨)에 닿거나 얹어놓으면 안된다. 캡 또는 바이지 모자는 선수의 이마 앞으로 80mm까지 나갈 수 있으며 이것이 측면 가리개 역할을 하면 안 된다.

7.6

사격 경기절차 및 규칙

7.6.1

사격자세

7.6.1.1

슬 사 (무릎 쏘)

- a) 선수의 오른발 끝, 오른 무릎 및 왼발은 사대 면에 닿을 수 있다.
- b) 소총을 양쪽 손과 오른쪽 어깨로 지지할 수 있다.
- c) 뺨을 소총 개머리에 밀착시킬 수 있다.
- d) 왼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위에 놓아야 한다.
- e) 팔꿈치가 무릎 앞으로 100mm, 또는 뒤로 150m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 f) 멜빵으로 소총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왼손 후방의 총대 전단이 사격 재킷에 닿으면 안 된다.
- g) 소총의 어느 부위든 멜빵이나 멜빵 부속품에 닿으면 안 된다.
- h) 소총이 기타 다른 지점이나 물건에 접촉 또는 지지하는 것을 금한다.
- i) 슬사용 베개를 오른발이나 무릎 아래에 놓을 경우, 발의 각도가 45° 이상 돌아가면 안 된다.
- j) 슬사용 베개 미사용시, 발의 각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발을 눕히거나 종아리가 사대 지면에 닿는 것도 허용된다.
- k) 허벅지 또는 둔부(엉덩이)의 어떠한 부분도 지면에 닿으면 안 된다.
- l) 사격 매트를 사용할 경우, 매트에 무릎 전체부위를 댈 수 있고, 또한 3개 부위(발가락, 무릎, 발) 중 1개 또는 2개의 부위를 매트에 댈 수도 있다. 다른 물건이나 충전재를 오른쪽 무릎 아래 둘 수 없다.
- m) 슬사에서 발뒤꿈치 받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바지와 속옷만이 선수의 둔부(seat)와 뒷꿈치 사이에 착용할 수 있다.

재킷이나 다른 것들을 둔부와 뒷꿈치 사이에 둘 수 없다.

- n) 오른손이 왼손, 왼팔 또는 사격복이나 멜빵의 왼쪽에 닿으면 안 된다.

7.6.1.2

복 사 (엎드려 쏘)

- a) 선수는 사대의 맨바닥 또는 사격 매트 위에 엎드릴 수 있다.
- b) 팔꿈치를 매트에 지지할 수 있다.
- c) 머리는 표적 방향으로 향하고, 몸체는 사대 위에 쭉 편다.
- d) 소총은 양손과 한쪽 어깨만으로 지지할 수 있다.
- e) 뺨을 소총 개머리에 밀착할 수 있다.
- f) 멜빵으로 소총을 지지할 수 있으나, 개머리를 받치는 왼손 후방의 개머리에 사격 재킷이 닿으면 안 된다.
- g) 소총은 어느 부위든 멜빵 또는 멜빵 부속품에 닿으면 안 된다.
- h) 소총이 기타 다른 지점이나 물건에 접촉 또는 지지하는 것을 금한다.
- i) 팔꿈치 앞쪽에 있는 사격 재킷의 전박(팔뚝)과 소매는 사대 면에서 들어 올린 것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 j) 전박(팔뚝)을 축으로 측정하였을 때, 멜빵(왼쪽) 전박(팔뚝)의 각도가 수평을 축으로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
- k) 오른손 및/혹은 오른팔은 왼팔이나 사격 재킷 또는 멜빵에 닿아서는 안 된다.
- l) 소총 복사 종목에서 사격복 바지의 착용을 금한다.

7.6.1.3

입 사 (서서 쏘)

- a) 선수는 인위적 또는 기타 지지물 없이 양쪽 다리로 사선 바닥 또는 사격용 매트 위에 자유롭게 설 수 있어야 한다.
- b) 소총은 양쪽 손과 어깨 또는 어깨에 근접한 팔의 윗부분,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바로 인접한 가슴의 일부분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c) 뺨을 소총 개머리에 밀착할 수 있다.
- d) 소총이 오른쪽 어깨 범위를 넘어서 재킷 또는 가슴에 닿으면 안 된다.
- e) 왼쪽 팔 윗부분과 팔꿈치는 가슴 또는 둔부(엉덩이)에 지지할 수 있다. 허리띠를 착용하였을 때 버클이나 고정구가 왼쪽 팔이나 팔꿈치를 지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f) 소총이 기타 다른 지점이나 물건에 접촉 또는 지지하는 것을 금한다.

- g) 손바닥 받침은 300m 스탠다드 소총 및 10m 공기소총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 h) 손머치/멜빵 고리는 300m 스탠다드 소총 및 10m 공기소총에서 사용을 금한다.
- i) “입사” 자세에서는 멜빵 사용을 금한다.
- j) 오른손이 왼손, 왼팔 또는 사격 재킷 왼쪽에 닿으면 안 된다.

7.7

소총 경기

규칙 7.7.4 소총경기 제원표 참조

7.7.1

50m 및 300m 3자세 종목은 슬사-복사-입사 순으로 사격하여야 한다.

7.7.2

본사사격 개시 전에 15분의 준비 및 시사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6.11.1.1 참조)

7.7.3

3자세 종목에서 선수는 슬사 및 복사를 완료한 후, 본사에서 시사로 시사에서 본사로의 표적 변경은 선수의 책임이다. 선수는 입사 및 복사 본사 사격 시작 전에 무제한 시사를 할 수 있다. 이 시사에는 추가 시간은 없다. 자세전환 후 선수가 본사에서 시사로의 표적 변경을 부주의하게 실패 하였을 경우, 이전 자세에서 기록된 추가 탄은 모두 무효처리하고 시사 표적으로 재설정된다.

7.7.4 소총 경기 자원표

종 목	성별	총 발수	본사표적당 사격발수	시사 표적수 (종이표적)	경 기 시 간	
					감적채점 또는 표적이동기기 (종이표적)	전자표적
10m 공기소총	남	60발	1발	4매	1시간 30분	1시간 15분
	여	40발			60분	50분
50m 소총3자세	남	120발	1발	자세별 4매	3시간 15분	2시간 45분
	여	60발	1발	자세별 4매	2시간	1시간 45분
50m 소총복사	남	60발	1발	4매	1시간	50분
	여	60발				
300m 소총3자세	남	120발	10발	자세별 1매	3시간 30분	3시간
	여	60발	10발	자세별 1매	2시간 15분	2시간
300m 소총복사	남	60발	10발	1매	1시간 15분	1시간
	여	60발				
300m 스탠다드 소총3자세	남	60발	10발	자세별 1매	2시간 15분	2시간
(주) 공시된 경기 개시시간 전에, 준비 및 시사시간 15분 부여						

7.7.5 소총 규격표

종 목	성별	최대 중량 (압력)	방아쇠	총열/시스템 전체길이	실 탄	엄지구멍, 엄지받침 손받침, 손수도받침 기포수준기
10m 공기소총	남 여	5.5kg	세트 방아쇠 사용금지	850mm (시스템)	4.5mm (0.177 인치)	일체 사용금지
50m 소총 3자세 및 복사	남	8.0kg	무제한	무제한	5.6mm (0.22 인치 룡)	입사에서만 손받침 허용
	여	6.5kg	무제한	무제한	5.6mm (0.22 인치 룡)	입사에서만 손받침 허용
300m 소총 3자세 및 복사	남	8.0kg	무제한	무제한	최대 8mm	입사에서만 손받침 허용
	여	6.5kg	무제한	무제한	최대 8mm	입사에서만 손받침 허용
300m 스탠다드 소총 3자세	남	5.5kg	세트 방아쇠 사용금지/ 방아쇠 최소압력: 1,500g	762mm (총열)	최대 8mm	일체 사용금지
(주) 소총은 모든 부속품을 포함한 중량을 검사하여야 함. (손받침 또는 손멈치 사용 시 이를 포함한 중량)						